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오을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45만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하고,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8. ~ 12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45만원”을 “49만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 당의 지급금액은 월 <u>45만원</u> 으로 한다.	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-- ----- ----- <u>49만원</u> ----- ----.
제8조의3(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 원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「통계법」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(全國 家口)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 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<u>10만원</u> 을 지급한 다.	제8조의3(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5만원</u> --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20